

1. 개정이유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('18.12.24. 공포, '19.6.25. 시행)에 따라 비양육부·모의 주소와 근무지에 관한 정보이용과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,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<시행령>

- 가. 집행권원 확보 위한 비양육부·모 주민등록 등·초본에 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(안 제7조제1항 개정)
 나. 비양육부·모 근무지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요청(안 제7조제2항 개정)

<시행규칙>

- 가. 면접교섭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(안 제3조의2 신설)
 나.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정(별지 제1호서식 개정)
 다. 접수증 개정(별지 제2호서식 개정)
 라. 면접교섭 지원 신청서 개정(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03171,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6호
- 전자우편 : jhjung@korea.kr
- 팩스 : 02-2100-6485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(전화 02-2100-6354, 팩스 02-2100-64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148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2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수엔테크(최상혁) ② (주)한진중공업(이윤희)
 ③ (주)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(임중선)
 나. 전화번호 : ① 02-2093-3485 ② 02-450-8758 ③ 02-3298-2600

2. 명칭 :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갖는 빗물저류조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이용한 빗물저류 방식 지중구조물 시공방법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수자원 /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

<기술의 요지>

신청기술은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갖는 빗물저류조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이용한 빗물저류 방식 지중구조물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, ① 다공성인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, 좌우 방향, 상하 방향에 대해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저류조, 그리고 ②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, 침전분리부,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고, 지상과 연결되는 점검통로가 형성된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이용한 빗물저류 방식 지중구조물 시공방법임

<범위>

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, 좌우 방향, 상하 방향에 대해 조립한 빗물저류조와,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, 침전분리부,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를 이용한 빗물저류 방식 지중구조물 시공방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-54호

엑셀러레이터 신규 등록
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엑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12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회사명	등록번호	등록일	소재지
주식회사 데일리파트너스	2019-3	'19.1.29.	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8, 10층 (역삼동, 글라스톤빌딩)
주식회사 타이탄벤처스	2019-4	'19.1.29.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 41-3, 본동 717호(중문동, 중문스마트빌)
재단법인 충남대학교창업재단	2019-5	'19.1.30.	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(궁동)